



전국의 여러 도시들이 이미 수립했거나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법적 계획으로 탄생하게 된 것은 2005년 3월 31일에 [도시공원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법률이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공원녹지의 체계화와 내용도 대폭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법률 개정안에 담겨져 있었던 도시공원녹지 관리체계개편의 주요방향은 첫째 도시공원녹지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였고, 둘째 실제 도시공원의 기능을 하는 데에도 법적으로 누락된 공원과 다양화되어 있는 공원의 유형을 법체계 내에 수용하였으며, 셋째로는 도시공원을 지정만 하고 오랜 기간 동안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야기시켰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었다. 넷째로는 도시공원녹지의 확충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녹지보전과 조성에 참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도시공원법개정안에서 새롭게 담았던 주요골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공원녹지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은 공원녹지의 확충·보전·관리·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10년 단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지역 일부에 대해 원활한 도시녹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확보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에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공원의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시공원을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구분하고 생활권공원은 4종류로 세분하고 주제공원은 6종류로 세분하였다.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는 내용으로는 새롭게 도시공원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고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조성계획이 고시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면적이 넓어 공원조성사업시행이 어려운 도시자연공원은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이유로 공원이 해제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사용이나 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녹지보전과 조성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과 관련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녹화협정을 체결해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하였다.

그 당시 도시공원법 개정안에 담겨진 도시공원녹지관리체계 개편방향은 2002년에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필자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수행한 [개발제한구역조정에 따른 녹지체계관리방안 연구]라는 정책연구에서 제시된 개선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정책연구에서는 도시공원녹지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재원확보방안도 제시한 바 있는데 법 개정안에서 누락되어 아쉬움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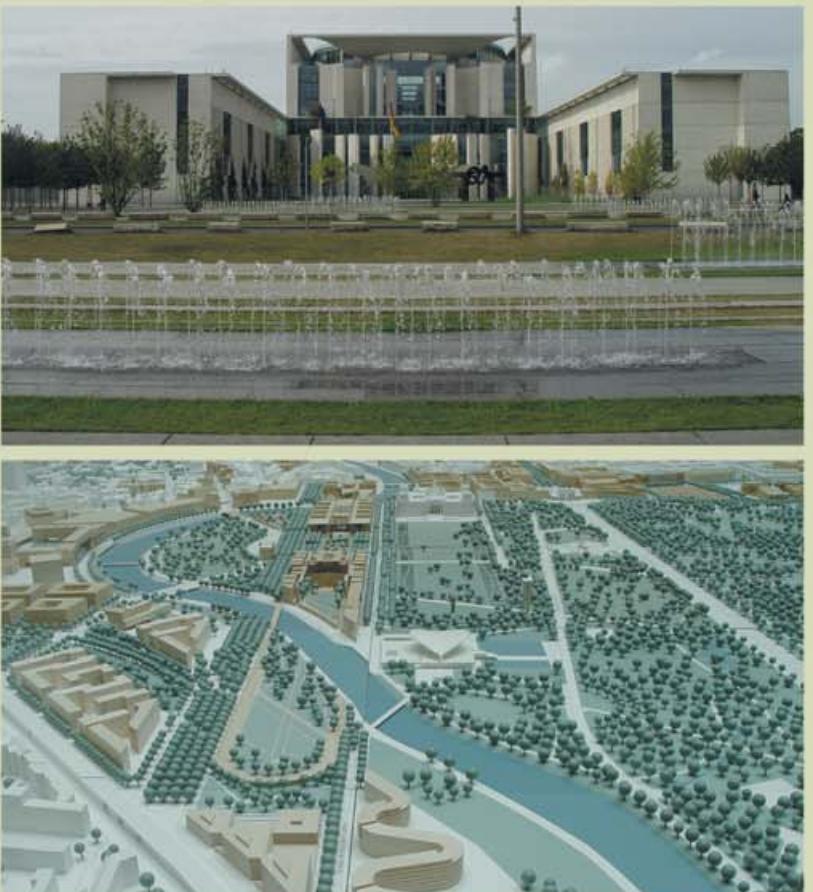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는데 개정의 주 내용은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토해양부의 개정사유를 보면 행정내부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점과 도시공원녹지의 조성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2005년 법개정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법정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한 이유는 각 도시에서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공원계획과 조성이 매우 중요한 역점사업이 되었으며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공원이나 녹지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시공원녹지의 정책, 계획과 설계, 시공의 모든 과정을 전문가들이 심의하고 자문할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한 것이다.

해가 갈수록 도시의 공원녹지의 수요가 늘어가고 시민들의 공원녹지에 대한 절적 욕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슈프레보겐지구 마스터플랜



베를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특징

베를린의 역사상 특히 2차 세계대전, 유대인 대학살, 전쟁 후 동서분단 등의 역사는 도시 전체를 메모리얼로 만들었다. 이러한 양상은 브란덴부르크, 장벽공원, 포츠담프리자,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등 수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지속될 전망이다. 수도이전에 따른 도심 재개발로 도심에 많은 광장 및 녹지가 등장하고 있으며, 대부분 미니멀리즘 양식이 주도적인 설계양식으로 등장하고 있고, 개방성과 정형성을 중요한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 사례로 슈프레보겐지구의 워터프론트는 도심에 시민들의 휴식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훌륭한 사례로 등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폐철도 역사에 새로운 녹지를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친자연적인 녹지의 등장은 도시생태계에 대한 기여와 장소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전혀 모르고 나온 안이라고 생각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도시공원전문가가 1~2명 내외가 포함되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도시공원전문가가 아닌 위원들이 도시공원의 심의와 자문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마다 공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시의 공원녹지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공원과의 모든 업무를 감독하고 자문하는 막강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번 입법예고안의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는 공원업무의 후퇴를 가져오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이 될수록 도시공원녹지가 도시의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해지고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서 도시공원녹지의 업무를 도시행정의 매우 중요한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한 것은 도로나 상하수도처럼 도시

의 필수적 요소인 도시 인프라로서의 공원녹지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뜻을 담고 있다. 각 도시마다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의 그린인프라를 어떻게 꿀격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모든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에서의 공원녹지와 오픈 스페이스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체계별계획 등 도시개발에 관련된 모든 계획의 수립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그대로 수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도시의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줌으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계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yangb@snu.ac.kr

편집자주_ 저자 원고 작성 이후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존치하도록 기존 입법예고안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내용 7면 'Issues & News' 기사 참조)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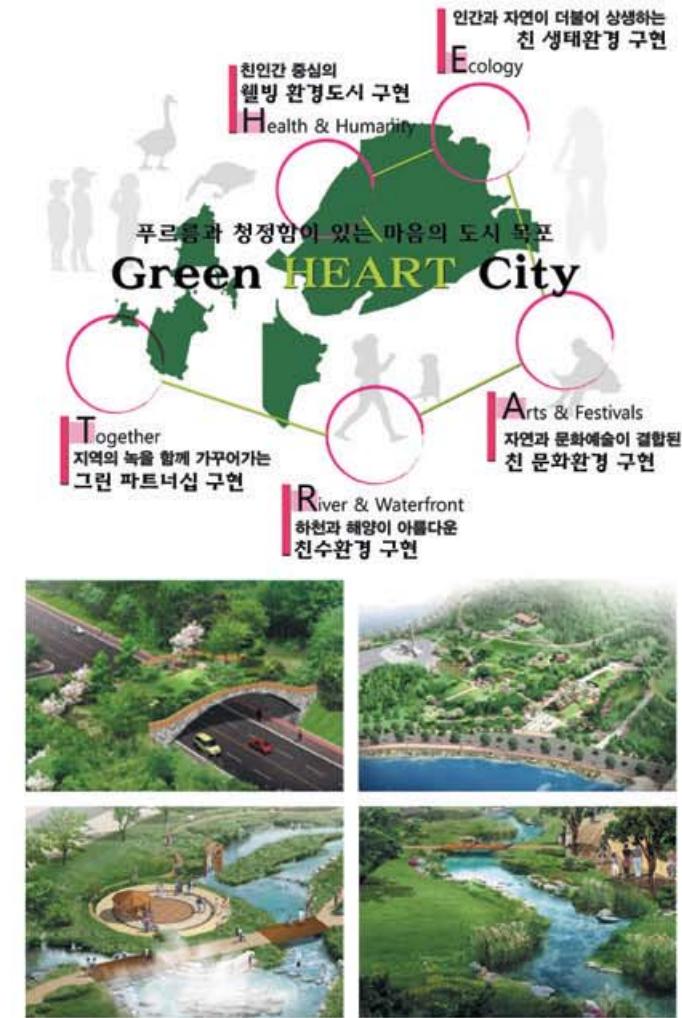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개별적인 공원과 녹지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고 가꾸는 도시의 녹색 골격을 만드는 일이다. 소위 '에메랄드 네크리스(Emerald Necklace)'라 불리는 보스턴 공원녹지계획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최근 들어서 도시의 환경뿐만 아니라 각 도시들을 개성있고 인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린핑거를 중심으로 도시민들에게 자연을 접하고 레크레이션 활동기회를 주고 있는 헬싱키, 전원도시의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밀턴 케인즈, 강력한 녹지축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캔버리 등의 공원녹지계획을 통해 공원녹지에 대한 계획과 관리가 도시 환경과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가능해 볼 수 있다. 또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의 희망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목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목포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친인간 중심의 웰빙 환경도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상생하는 친생태 환경, 자연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친문화 환경, 하천과 해양이 아름다운 친수환경, 지역의 녹을 함께 가꾸어가는 그린 파트너십 등 5대 목표 달성을 통하여 녹과 해양의 푸르름 및 환경의 청정함이 담긴 마음의 도시인 'Green HEART City'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5대 목표는 목포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로 접근하여 서로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맺으며 통합적인 녹색 망(Integrated Green Network)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기본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계획을 진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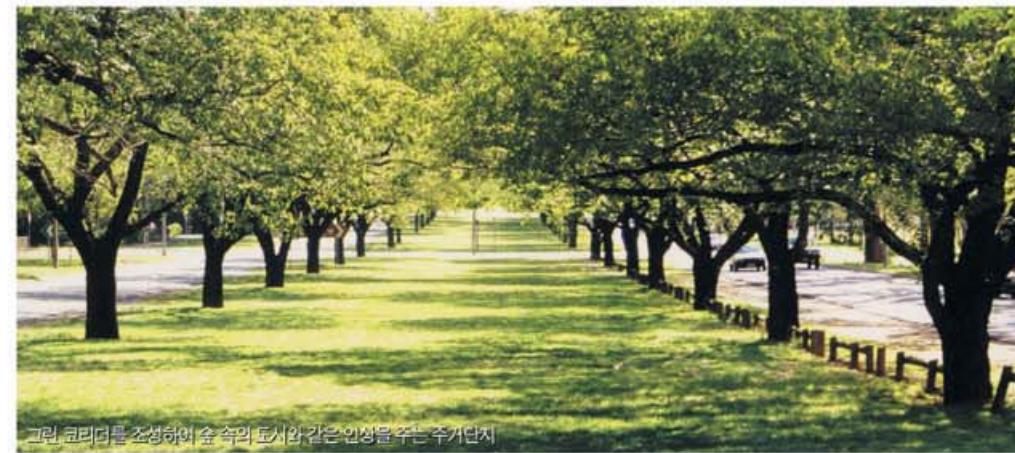
Helsinki, Finland

헬싱키 인구는 55만명, 도시면적 686km²으로 광역권을 포함하면 인구 12만명, 면적 2,968km²에 달한다. 오늘날 헬싱키의 도시구조는 중심상업지구(CBD:Central Business District) 도시 중심과 도시 외곽의 주거단지 및 지구와 연결하는 방사형 철도와 도로의 철도, 그리고 도시외곽은 동심원 도로로 구성된 자전거 바퀴(half wheel)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헬싱키의 남쪽은 섬과 만으로 구성된 다양한 해안선이 있으며, 북으로는 산림, 계곡이 자리잡고 있어 이것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 때문에 도시 북쪽으로부터 도시중심으로 뻗어 내려오는 그린핑거(green finger)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도시민들에게 넓은 지역에서 자연을 접하고 경관을 즐기며, 레크레이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센트럴 파크는 길다란 그린 코리더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도시의 공간구조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공원으로서 시민들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Canberra, Austra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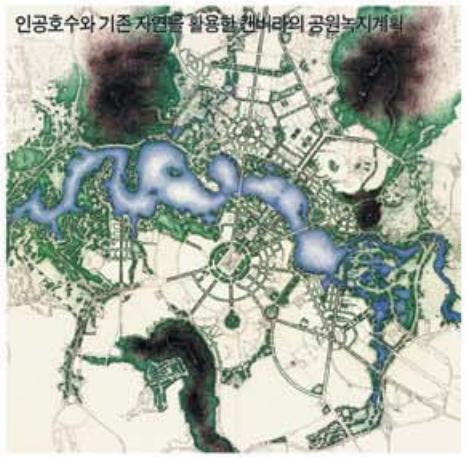
호주의 수도 캔버라는 정치, 행정의 중심지로 총 면적 약 2,400km²인 계획도시이다. 1911년 수도로 확정된 후에 '세계최고의 수도 건설'을 목표로 국제현상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총 137명의 응모자 중에서 미국 시카고 출신의 그리핀(Walter Burley Griffin)의 작품이 선정되어 현재의 도시의 모습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리핀의 안은 토지, 공공기관, 물의 3개 중심축을 설정하고 넓은 녹지와 기념비적인 건축물, 수변공간을 도시 곳곳에 배치시키고 도시외곽지역에 주거지역을 배치하였다. 주거단지는 계획 초기부터 주변 자연경관, 특히 오래된 수목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계획되었으며, 오랜 수령을 가진 울창한 수목, 그린코리더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전원도시 같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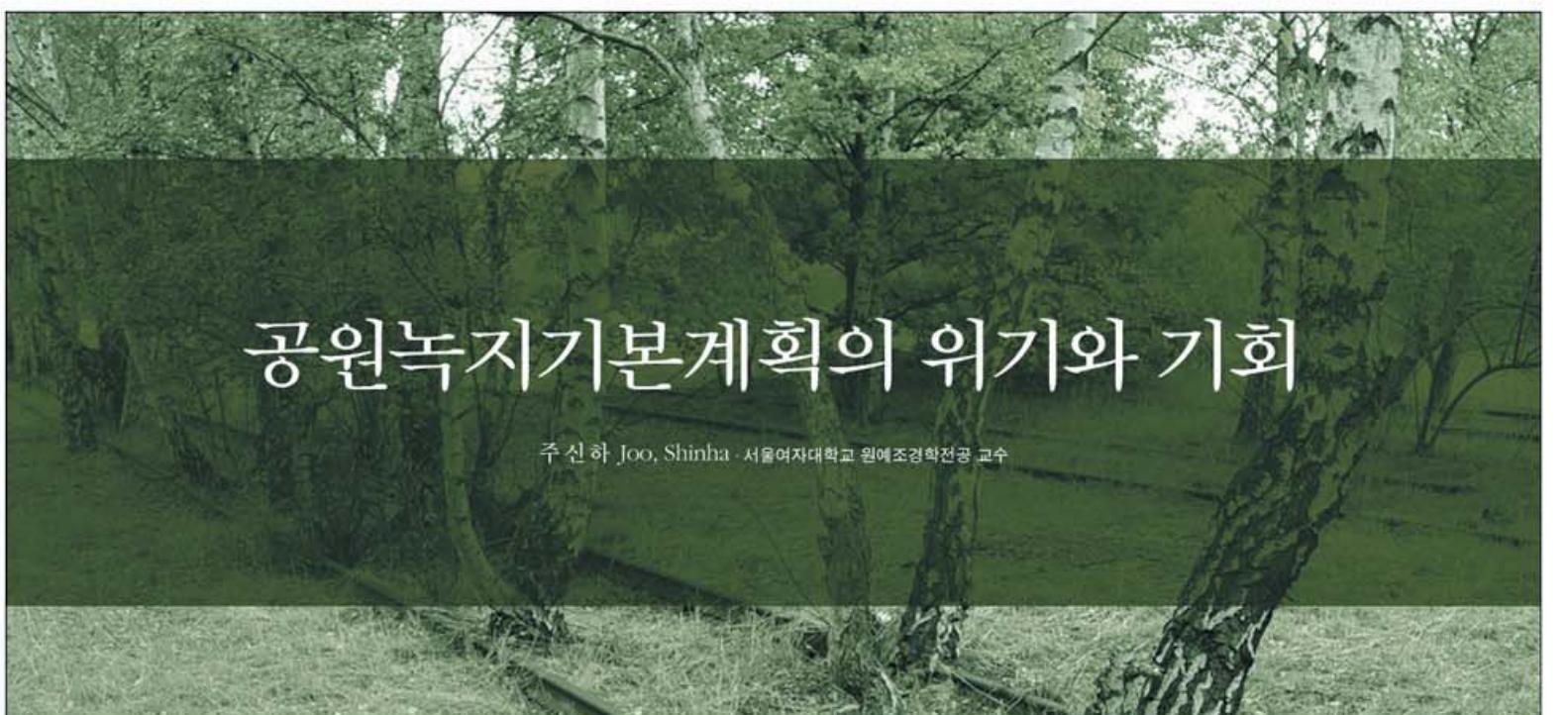


Milton Keynes, UK

밀턴 케인즈는 런던으로부터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으로 런던시는 총 25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신도시를 개발하고자 1970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으며, 현재까지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공원체계는 도시의 이미지와 절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어 하며, 주변지역에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고 공원과 개발지역을 적절히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주거단지는 모두 금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마다 시민주 말농장을 조성하여 자연을 체험하고 유기 채소를 재배하도록 고려하였다.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로는 자동차와 만나지 않도록 만들어졌으며, 완벽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도록 하였다. 공원 및 녹지의 자연을 잘 보존하고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여 살아있는 생태계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자연을 체험하고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학습원을 운영하고 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위기와 기회

주 신 하 Joo, Shinha ·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조경학전공 교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 개정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도시공원법이 개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의무화하여 많은 지자체가 이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미 시행대상 지자체 중 70% 이상의 지자체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에 있어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는 쾌적하고 품격 있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원과 녹지를 다루는 조경분야 인력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기회의 순간은 동시에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다. 작년 말에 개정된 도시공원법 이야기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과 국토해양부장관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권 폐지,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공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공원녹지와 관련된 규제적 성격(사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전혀 규제적이지 않지만)을 완화하여, 도시공원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확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기본 입장이다. 올 4월에 입법예고된 도시공원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한층 강화되어 도시공원위원회까지 폐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시행한 지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논의되는 이러한 법률적인 변화양상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바라보는 인접분야와 행정실무진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 더 씁쓸하기도 하다.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부문별 계획으로 공원녹지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굳이 별도의 계획으로 이원적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량을 늘리나는 지적인 셈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공원녹지분야의 계획의 깊이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진행하는 계획의 수준의 차이로 알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보여준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충분히 성실히 실행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 달 10일에는 (사)한국조경학회 공원녹지연구회 주최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진행되어 온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있었는데,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반성과 함께 향후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발전적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었다. 도시

기본계획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며, 공원녹지 관련 기초자료를 구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보다 개방적인 입찰제도를 도입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개진되었고,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입증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다소 차별성 없이 진행되어 온 면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노력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는 쾌적하고 품격 있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원과 녹지를 다루는 조경분야 인력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통된 의견이 공허한 주장만은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얻은 성과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진행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공원녹지 관련 기초자료가 세밀하게 조사되어 있어, 향후 공원녹지 정책수립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 지형지세, 생태기반 등 자연환경자료와 인구, 토지이용 등과 같은 인문환경자료, 공원, 녹지, 가로수 및 보호수 현황 등과 같은 공원녹지 전반에 걸친 자료와 같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일부 자자체의 계획에서는 이러한 공원녹지 관련 현황파악을 기반으로 하여 공원소외지역을 파악하고 향후 지역균형을 고려한 공원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방안 제시 등 매우 유용한 접근방법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각 자자체별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축소나 도시공원위원회의 폐지와 같은 논란은 녹색성장이 화두가 된 시점에서는 시대에 거스르는 내용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준을 상향평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반기운 소식이 들려왔다. 공원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를 끝으로 한 도시공원법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위원회를 존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조경관계자를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반대의견 개진이 상당히 큰 영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우 반기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회인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 그러나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도시정책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도시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해 본다. sinhajoo@swu.ac.kr

Issues & news

조경문화·녹색문화 라젠틱 www.lafent.com

서울. 공공공지 12만9963m² 공원·녹지 조성

서울시는 도심 및 주택가 인근에 사실상 공원·녹지로 조성된 공공공지 48개소 12만9963m²를 찾아 공원·녹지로 도시계획 결정을 했다고 지난 6월 밝혔다. 공공공지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실질적으로 공원이나 녹지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공원·녹지시설로 갈등되자 애니 구체적 관리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 후 개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서울시는 공원·녹지 기능을 하는 공공공지나 사실상 녹지 48개소 12만9963m²를 시민들의 영구적 휴식 및 녹지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로 도시계획 결정해 공원 및 녹지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을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

울산시는 지난 6월 '2010년 을산시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 기준연도 2009년, 목표연도 2025년, 계획인구 145만명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자연과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비전으로 공원천국, 숲의 도시, 물의 도시, 걷고 싶은 도시, 문화가 끊이는 도시 등의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의 목표는 공원이 487개소에서 579개소로 92개소(53만1000m²) 크게 늘어나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31.25m², 1인당 생활공원 면적은 21.81m² 등으로 유지된다. 사업비는 총 1조9250억원으로 추

선했다. 을산시는 "그동안 자문위원회 자문,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원로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지침] 등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백지화

국토해양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도시공원위원회 존치'에 관한 사항을 통보했다.

지난 4월 5일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통해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조경계보다 오히려 일반 대중들로부터 차기운 외연을 받게 됐다. "도시공원에 대한 전문위원회 폐지는 정부의 녹색성장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 오히려 호흡을 역행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조경과 녹지분야의 전문성이 보다 적극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 결과 지난 5월 31일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존치하면서 기존의 입법에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최초 도시공원의 신축한 조성 및 공원녹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입법예고되었던 '도시공원위원회의 폐지'가 기로막힌 결정적 근거로 심각한 업무지연, 부실한 심의예산, 그리고 미래지향적 친환경도시 구현에 부적합하다는 점 등이 있었다. 이로써 도시공원위원회의 존치가 합

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됐다.

다만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위원회는 존치하되,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적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법령 정을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아, 부분적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를 유지키로 했다. 그간 실적이 저조했던 지방 도시위원회의 변화는 불기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집습니다

지난 5월 1일 발행된 〈조경정보 제7호〉의 내용 중 1면 하단 사진 설명을 '강릉 교통립축제 →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로, 8면의 '(3)Chaumont, Paris, France → Chaumont, France'로 바로집니다.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는 2010년 9월 1일 발행될 조경정보 제8호의 주제는 '도시대표공원'입니다. 관련 정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라젠틱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기간 2010년 8월 5일까지
www.lafent.com
보내실 곳 lafent@lafent.com
문의 031-955-6042-4

공원녹지기본계획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원녹지기본계획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6월 10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 종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학계는 물론 업계 및 관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 이날 토론회에는 향후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분야를 대표하는 법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물들이 논의되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5조에 의거 "시·도지사 및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시의 장은 10년을 단위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계획이다. 현재 기본 계획은 전국 시행률 73.8%에 달하고 있지만 도시 전체의 공원녹지상을 제시하는 기준 취지와는 달리 획일화된 도시기본계획 수준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난 의견이 상당했다. 계획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 빌주처의 제한적 입찰로 일부 조경회사만이 입찰 수행한다는 점, 공원녹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특히 얼마 전에 큰 논란을 자아냈던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안 등과 밀접히 정부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축소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또 다른 국민에 직면하게 됐다.

사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가 제시한 입찰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 여기엔 교통, 상하수도, 도로 및 공항 등의 기술 자격이 포함된다. 빌주처의 기준에 맞고자 한다면 일반 기술사시무소 및 일반 조경회사의 참가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결국 대부분의 사업은 몇몇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술용역으로는 부족한 발주 금액으로 상당한 수준의 애로가 되어온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도시의 발전지표 포함, 시민의 의견을 적극 표명, 지자체 장에게 직접 보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의 전체 녹지

방향 제시, 경관이나 생태적 요소가 포함된 조경만의 특징이 담긴 네트워크 구상, 도시계획과는 다른 혁신적이고 새로운 안 제시, 공원녹지계획의 흥보 등을 전략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발전적 방향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 조율과 함께 정책을 수행하는 시행자에게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 외에도 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과업지침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관련 단체에서 적극 검토하여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각 지자체가 공원녹지관련 정 보를 다양한 주제의 도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현장조사와 연구 및 도면 작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원녹지계획은 그 법적 지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 성격과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대안 마련도 필수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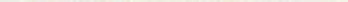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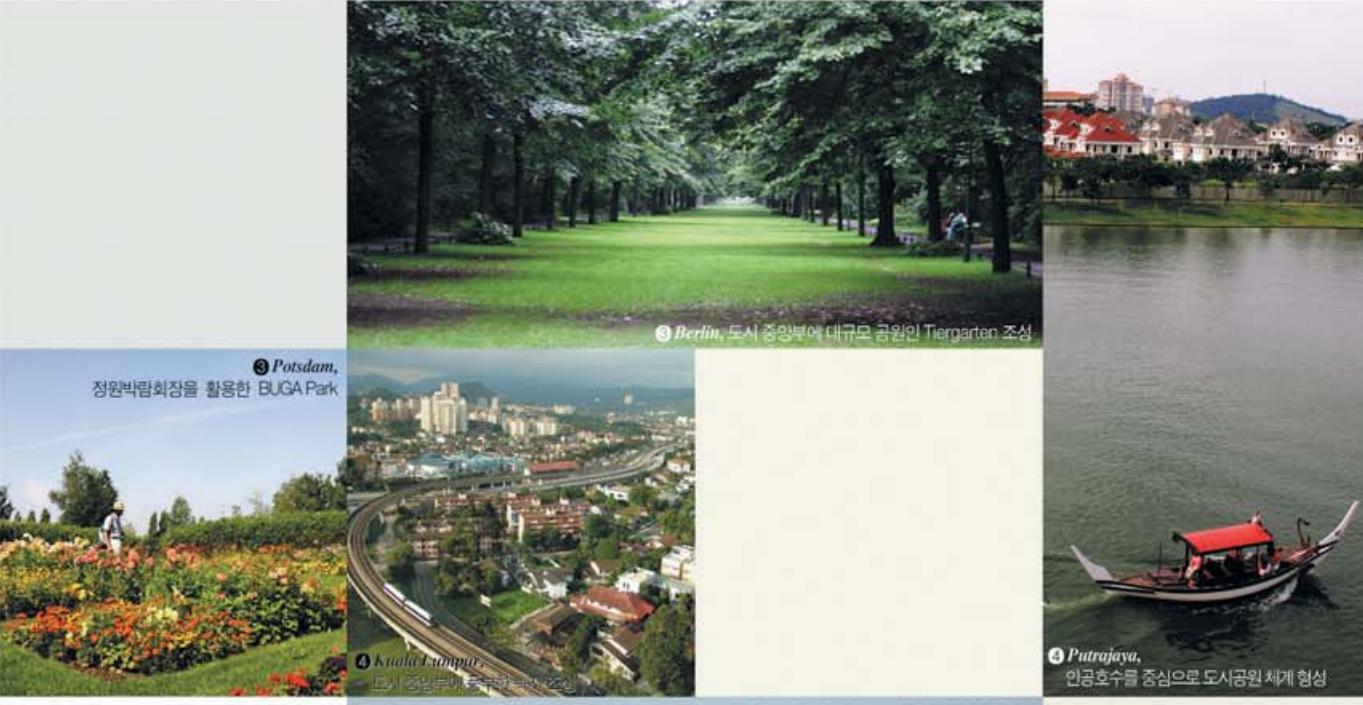


이달의 인기 검색 키워드

- HOT Issues & News
-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확장
- 여의도생태공원 개장
- 조경관련학회 실무 강좌
- 조경인 체육대회
- 도시조경기본계획 수립 심포지엄
- 100인문학공원
- 6·25기념공연
-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백지화
- 공원녹지법 입찰 자격기준
- 한국조경사회 30주년 기념행사
- 위드아웃 대상 건설사
- 울산시, 공원녹지사업

조경분야 포털사이트 www.lafent.com에 접속하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뉴스 및 행사, 관련정보를 상세히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 조세환
편집위원장 | 이상석
편집위원 | 주신하
강호철 관진숙 박문호 이형숙 정국주 조종범
김도경 김태경 이유직 조경진 진양교 최신현
간사 | 임해숙 박정희
2010년 7월 1일 발행 | 발행처 |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학회 발간 정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1007호
TEL. (02)565-2055 | FAX. (02)565-2056 | e-mail_kila96@chol.com